

성매매행위등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2. .

발 의 자 : 조배숙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행위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형태별로 강화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한 이윤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원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범죄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성매매행위자 중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된 자로 구분하여 종전의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한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성매매행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한 기존의 선도보호조치를 폐지하고 성매매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력, 협박,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성매매된 자로 정의 함(안 제2조제3호).
- 나. 성을 파는 행위 및 음란한 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하여 사람을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자,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라.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다만 성매매행위를 한 자 중 성매매된 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할 목적으로 종업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장 또는

종사자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사. 성매매된 자, 성매매알선등행위 등 범죄를 고발자 또는 신고한 자의 사행활보호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아. 성매매된 자, 성매매알선등행위 등 범죄를 고발한 자 또는 신고한 자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종류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차. 외국인여성이 제5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고발 또는 신고하여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카.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그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제8조제1항의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성매매 행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 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7조).

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 의료기관을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시설 이용자의 질병치료, 보건상담 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33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비교 :여연안의 -- "성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삭제됨

단순한 문구 수정이므로 동의함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의견 : 여연안의 제2조 제5호에서 “성적인 음란행위를 제공함과 아울러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 또는 이용하는 것 및 성매매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 누락됨으로써 보도방,소개소 등의 행위가 사각지대화되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동의하기 어려움.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 및 상태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1)

가.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 1) 성매매된 자의 개념에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을 제외할 경우 이들은 가,나,다목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국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입증하여야 함. 이렇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노출시켜서 처벌 및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된다. 국제협약에서 성매매와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매매된 자로서 국가가 이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형사책임의 주체로 처벌하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매매된 자로 예외없이 간주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제실안은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적어도 라목을 신설하여 “여권 등의 압류, 불법체류에 대한 협박 등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경우도 이를 넓혀야 한다.

또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성적 인신매매”의 정의 규정이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

나.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

다.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의한 중독

의견 : 장애인, 외국인 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

호 소정의 ‘청소년’은 여연안에서 ‘성매매된 자’로 간주되었는데

본 안에서는 전부 삭제되어 있음. 보완장치가 없는 한 본 조

항에 대하여는 반대함.

* 4호 “성적 인신매매” 정의 규정 삭제도 반대함. “인신매매”의

개념을 법률상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2.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원조의 제공
3.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간 업무협조 및 외국과의
사범공조

의견 : 성매매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6호), 실태조사(3,4호) 삭제 반대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성매매강요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행위
4.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의견 : 제4조 5호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공급 또는 소개하는
행위” 삭제 반대

※ 제4조(금지행위)

1.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행위
2.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3. 성매매행위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성매매행위
5.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 조항(제5조) 삭제

제 반대

제2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2)

* 여연안 중 제6조(성매매된 자의 추정)조항 삭제 반대

본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본 조항은 실제 수사 실무에서 “강요된 성매매”라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임을 주장하여도 윤락행위자로 처벌되는 상황(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을 조사하여 주고 그에 따른 혐의를 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라 일단 인정되는 혐의에 대하여 이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유죄의 보강 증거를 보완하는 것을 본질적인 업무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매매된 자”로 일단 볼 수 있는 상

2) 여연안은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8,9,10조 등 참조) 따라서 2장의 제목에도 “절차에 관한 특례”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황에 처한 자가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
을 전환하여 수사기관이 성매매된 자가 아닌 성을 파는 자임을 적극
적으로 입증토록 하여 그 입증이 되지 않는 한 형사 입건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규정이다.

따라서 무죄추정 운운 주장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제5조(인신매매에 의한 강요행위)³⁾ ①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금전, 기
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매매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나체공연 등 음란한 행위를 하
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매매하여 국외에 이송하거나 외국
에 거주하는 자를 국내에 이송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여연안에서와 같이 “성적 인신매매(2조 4호) 정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인신매매“의 모든 범주
가 법제실안 5조에 망라되어 ”이주노동자, 장기밀매, 가내노예, 우편 주문신부“등 국제협약에 명시된
”trafficking in persons“의 포함되어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성적 인신매매”의 범
주에 국한되는 것이다.(sex trafficking)

4) 형법 제288조 부녀매매죄의 구성요건은 1항에서 “악취,유인 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
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녀매매죄의 범주는 매우
협소하여 성매매산업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인신매매의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여연안 제2조 제4호의 “성적인신매매”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성적인신매매와 관련된 유통경로
일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규정을 하고,이에 따라 안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 “성적 인신
매매”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노예매춘”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을 전면 폐기,수정하고 있는 법제실안은 입법청원안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견 : 전면적으로 반대함. 청원안을 참조하여 법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수정을 요구함.

제6조(강요행위 등)5) ①타인을 강간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마약 등을 제공하여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 감금 또는 감시하는 자 및 이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 카메라 등 자유로운 출입을 어렵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

5) 여연안 제12조는 “성매매된 자”를 양산하는 알선등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것으로 1항은 ‘성매매된 자’ 정의 규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2항은 그 대가를 수수, 약속한 알선 등 업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며, 3항은 성적인신매매자와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알선 업자들을 더욱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그런데, 검토안은 이와 같은 여연안의 근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성요건 및 형량을 비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입법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안의 원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 운용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을 하게 한 자
3.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로써 또는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 견 : 기본적으로 여연안의 프레임대로 정리하는 것을 요구함.

제7조(알선영업행위 등)6)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자
2.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자
2.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

6) 여연안 13조 1항 3,4호의 규정은 모두 “인가,비인가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하여 성매매관련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위계,허위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관계업소에 주선하는 행위 자체를 광범위한 알선등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하고 그 대리업무까지 처벌하고자한 근거규정이다. 그런데 법제실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 모두를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없이 전면 삭제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2.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

여연안 5항 삭제 관련 : 동의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구조화하는데 암적인 역할을 하는 기생집단들에 대하여 성매매 관련 수입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생계비, 생활비, 용돈, 학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그 수입에 의존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이 제도화, 구조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제8조(성매매행위)7)①성매매행위를 한 자(성매매된 자를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성을 사는 자가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동화상 기타 영상물의 제작을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마약 등을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7) 여연안 14조 제5항을 제22조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있으나 6항의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성보호사건” “성매매사건”등으로 사건 자체가 별도분리되어(가령 실무상 가정폭력사건은 별도 분리되어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지, 여연안 제12조의 “심리의 비공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검토안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광고행위 등)⁸⁾ ①성을 파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또는 나체공연 등 음란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간행물, 유인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성매매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행위를 위하여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신고의무 등)⁹⁾¹⁰⁾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

8) 여연안 15조 제1항 “모집행위를 한 자”는 광고행위자는 아니나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문 제목을 “광고행위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여연안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15조 3항의 삭제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음.

9)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

10) 여연안 제6조 성매매된 자의 추정 규정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상담소의 장 또는 종사자(이하 “시설종사원”이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이용자(입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엄수 등의 의무)¹¹⁾ ①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종사원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성매매행위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행위자 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와 관련된 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심리의 비공개)¹²⁾ ①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 및

11) 별다른 의견없음.

12) 자수자의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심리나 재판을 공개할 경우 보복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이것은 성매매가 성매매알선업주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매매여성은 그 조직의 말단 도구로 이용되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검토안에서는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성매매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 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보호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¹³⁾ ①재판장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 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 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시설종사원 중 1인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개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동석자가 출석하기 전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별다른 의견없음. 동의함.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자 등이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성매매행위 관련 채권의 효력)¹⁴⁾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종류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채권에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약정한 위약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 각종 채권을 포함한다.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조치)¹⁵⁾ ①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성매매된 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성매매

14) 검토안에서는 여연안 22조 3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인신매매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인신매매 비용을 부담한 자가 성매매여성의 채무 등을 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지불받은 경우 이를 환불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몰수,추징 대상이 아닌데도 검토안에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여연안 1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현행 윤방법 20조 채권무효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각종 차용증 기타 계약문서들이 과연 20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쉽게 식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서 이탈할 경우 사기죄로 입건되어 처벌되는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현장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관계들을 나열하여 주고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들을 포괄하여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들이 쉽게 채권관계가 무효임을 인지하고 기존의 굴레에서 쉽게 이탈하게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역시도 그러한 업소와 여성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기죄 처벌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매매업주를 처벌하는 수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여연안 1하의 자구는 전혀 포기되거나 생략될 수 없다. 따라서 여연안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15) 별다른 의견없음.

된 자를 이 법이 정한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일시지원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타인의 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권의 내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¹⁶⁾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지원요청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¹⁷⁾¹⁸⁾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에 대

16) 단지, 협조(전화 연락 등)으로 국한될 경우 상담소 직원들의 신변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행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야 한다. 출동 경찰의 경우 성매매알선업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당연히 성매매알선행위를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범죄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그곳에 있는 성매매된 자를 구호하는 등 인권보호 업무까지도 함께 경찰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경찰의 출동은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출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협조”정도로 규정할 경우 출동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실효성이 문제된다.

17) 여연안17조는 성매매된 자가 아닌 성매매여성, 기타 하부 알선종업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수자 기타 신고자의 경우 필요적 면제로 입건을 하지 않게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을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전달체계를 노출시켜 형사수사절차가 촉진되도록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검토안은 자수자를 형법상의 임의감경조항으로 방치하여 놓고 단지 예외적으로 알선업주의 알선행위를 신고하여 자신의 성을 파는행위가 불각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 감면을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특례를 90%이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여연안의 위 규정은 이 법 전체의 가장 골격이 되는 조항으로서 고도로 은닉되어 있는 성매매알선범죄를 “내부비리제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노출시켜 엄벌하고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퇴출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 조차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역시도 사문화된 입법이 될 것이므로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원안대로 해야 한다.

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¹⁹⁾ ①외국인여성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실을 20)고소·고발 또는 신고하

18) 또한 여연안 17조 4항을 검토안에서 삭제하는 것 역시도 성매매알선업소를 중심으로 제도화,조직화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업주와 성매매여성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한 업주의 사기죄 등 고소 사건으로 인한 성매매여성의 사기죄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 굴레에서 해당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다. 이미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 채무관계는 무효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입장에 따라서는 이를 사기죄로 입건하여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채권무효 조항”만으로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 및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고 성매매알선업주나 기타 인신매매 조직은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에 국한된 예외적인 것이어서 입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다.

가령 실무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이러하다. 즉, 성매매업주들은 성매매여성이 “채권무효 주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선불금 달라. 또는 빚 갚아 달라”고 하여 돈을 지불하여 데리고 왔더니 며칠만에 도망갔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빚을 갚을 의사가 없는데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형태의 사기죄로 입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무효화된 채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맺게 한 성매매 여성과 알선업주와의 관계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속인 바 없다는 점을 밝히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사기죄로 처벌 받고 별도로 종전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됨으로써 점점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성매매업주는 알선범죄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데려오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 설사 극히 일부의 성매매여성이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는 성매매업주가 성매매알선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도 없고, 보호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국가가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하여 사기죄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차단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검토안은 입법 목적을 이해조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19) 여연안은 12조(강요행위 등),13조(알선영업행위등),14조(성매매행위),15조(광고행위의 금지 등)를 포함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포주들의 알선영업행위, 성매매유인을 위한 광고 및 모집행위자들, 인신매매 관련자들(국제간, 국내 불문)에 대한 고소,신고의 경우에도 동 사건의 1심 종결 시까지 중요한 목격자 내지 참고인으로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내국인보다 오히려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범죄(내국인 관련) 및 각종 허위 광고 및 모집을 통한 공급행위, 여권 등의 압수 등을 통한 성매매 강요 등에 의한 인신착취 행위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성매매알선범죄 및 각종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고소,신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 사실에 국한하는 검토안은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찬성할 수 없다.

20) 여연안대로 제한 규정없이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여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 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이 법이 정한 지원시설의 이용 등 성매매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중에 있는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여성에게 금전급부의 불이행,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5조 내지 제7조의²¹⁾ 범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1) 고소, 고발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규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그 조항을 제5조 내지 7조로 제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법에서 정한 범죄”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몰수·추징) 제5조 내지 제7조²²⁾23)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다음 각호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²⁴⁾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수익은 술값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총 수령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그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제1호의 재산의 보유 또는 처

22) 여연안 16조 제1항의 15조는 바로 광고로 인한 수입을 몰수,추징한다는 규정임. 불법광고,모집과 관련한 수입도 직접적인 알선범죄 못지 않은 불법수익이므로 이는 분명하게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토안에서 광고행위 관련 조항을 생략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부분에는 검토안에서 수정할 것을 지적한 내용을 전제로 한 제9조가 포함되어 규정되어야 한다.

23) 여연안 16조 3항의 삭제 의견에 동의함.

24) 검토안은 정의규정에서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이 조항에서 수정된 내용대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함.

분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이체의 재산.

3. 제1호, 제2호의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화
된 재산

*여연안 제18조 관련²⁵⁾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의 범
죄”를 개정법률안으로 의원입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함.

제20조(보상금)²⁶⁾ ① 제5조 및 제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
이 확정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이 몰수·추징된 경우에
는 몰수·추징된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
당 신고자에게²⁷⁾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25) 여연안 18조 신고자 보호 규정을 검토안에서는 별도 입법을 조건으로 삭제하였는 바, 동 조항은 이 법률을 유지할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므로 이 법 통과와 함께 보호법 해당 조항의 신설안도 통과되어야 한다.

26) 검토안과 여연안이 동일하므로 이의없음.

27) 여연안 제19조 제1항 “범죄신고(자수를 포함한다.)”은 다소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기 범죄를 자수한 자까지 보상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크므로 “범죄신고(자수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타인의 범죄행위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검토안에서 이를 단순하게 삭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내부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범죄신고행위를 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기범죄를 자수하여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업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알선 범죄의 수사의 단서가 확보될 것이며, 이와 별도의 적극적인 신고행위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릴려면 자수로 인하여 수사의 단서가 제공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가 성28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영업소를 제공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신고에 의하여 영업하는营业소를 대상으로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8) 검토안에서 영업자로 국한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경우도 당해 건물이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것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성매매업소의 장소로 제공된 것임) 이러한 경우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상의 업태위반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계속적인 범죄행위를 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라는 개념을 용인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정지하라”는 한시적인 처분이 되는 것이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할 것이지 영업정지의 대사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아닌 경우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폐쇄를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2항 참조) 구분하였으므로 가혹한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에 대하여도 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장소에 동종, 유사 업태로 신고하고 성매매알선업을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취지가 바로 안 제4항이다. 이 부분도 검토안에서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여성 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이 있는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²⁹⁾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간중이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속행된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³⁰⁾

제3장 보호처분

29) 1년 기간은 너무 짧고, 같은 영업이라는 개념 역시도 너무 좁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동종 유사업소를 최소한 3년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0)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대물처분으로서 영업을 승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년 후에나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고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굳이 검토안의 7항이 필요하다면, 영업으로서 제공된 장소가 아닌 우연한 장소제공에 기인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해당 조항을 두면 될 것임. 더욱이 검토안 7항은 양수인에게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실효된 것을 양수인에게 연장한다는 것 밖에 안되어 규정 자체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22조(성보호사건의 처리)³¹⁾검사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관할)①성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성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의 성매매 행위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한다)·수강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보호관찰
4. 이 법이 정하는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31) 별다른 의견없음.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성매매행위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보호처분의 변경)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다른법률의 준용) 성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3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5조 규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행위”로, “가정보호사건”은 “성보호사건”으로 본다.

제4장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28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³²⁾를 위한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지원시설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이용 희망자,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을 대상으로 3월의 범위

32) 여연안 63조 제1항과 같이 “성매매된 자”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라는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검토안대로 할 경우 성매매된 자 모두가 사용자격을 잃게 되어서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대다수 대상자들이 배제되므로 동의할 수 없다.

내에서 숙식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자립지원시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로서 희망자,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 경우 이용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청소년지원시설 : 제2호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시설 이용 해당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년에 달할 때까지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교육 과정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29조(시설의 설치)³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을 파는 행위 를 한 자³⁵⁾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을 지역별 균형과 시설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33) 검토안 2항은 여연안 65조를 대체하여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고, 시설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업무내용을 국가의 의무로 강제할 수 없으며, 예산상의 고려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등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여연안대로 해당 조항을 살려야 한다.

34) 광역단위로 최소한 1개씩은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연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5) 각주 31번과 동일하게 “성매매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 여연안 66조는 삭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일종의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정한 근거조항이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이다. 이르 삭제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여부 및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인가 여부를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게 되고, 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당해 서비스의 내용이 좌우되는 악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법률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0조(시설의 운영)³⁶⁾ ①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36) 별다른 이견없음.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³⁷⁾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담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등) ①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등 상담

2. 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시설에의 연계

37) 여연안 68조 제1항과 같이 “성매매된 자 기타”와 “(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성매매된 자”도 이용권자임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토안의 해당 부분은 반대함.

3. 법률정보 제공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시 동행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33조(의료기관 지정 등)³⁸⁾ ①여성부 장관은 제24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료기관을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한 질병치료, 보건상담 및 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여연안 72조 관련 : 본 조항은 일종의 한시적인 일시보호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을 전제로 하여 국기법상의 급여 지원과 각종 교육훈련을 통한 노동 시장 복귀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된 자 및 기타 여성의 경우 복귀할 가정이 대부분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도 단절되어서 국기법상의 긴급

38) 여연안 71조 2항과 같은 예산지원 의무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예산확보가 유동적이 되어서 서비스가 실제로 집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적 제비용을 고려한다면 그와 같은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은 시설을 통하여서만 실질적으로 기초법상의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도 거의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이번에 아예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된 자 등을 포괄하여 국가법상의 조건부 급여 또는 한시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지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34조(비용의 보조)³⁹⁾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도·감독)⁴⁰⁾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

39) 여연안 73조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가 이용자들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할 의무 내지 채무로 예산에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여연안에서 전액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그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검토안과 같은 재량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40) 별다른 의견없음.

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시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또는 상담소에 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29조제2항 또는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41)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시설이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일시지원 시설,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시설의 폐쇄 등)42)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또는

41) 관계법률과 충돌될 위험이 없으므로 시설의 경우도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미신고시설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시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또는 상담소에 한 한다.

1. 제29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시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2) 여연안의 관련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시설이용자들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시설에서는 시설장 또는 그 종사원에 의한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상의 강간(미수포함),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서 이와 같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절실하다.

예. 5. “ 시설장 기타 시설종사자들이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6.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7. 기존의 제4호

로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안 제38조 제1항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제4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종사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9조 및 제4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는 유효하다.

제5조(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를 이 법에 의한 “일시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善導保護施設” 및 “自立自活施設”을 이 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女性福祉相談所”를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1조의 規定에 의한 지원시설”로 한다.

제38조제3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제16조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31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방해하거나 부정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 받게 하거나 지급 받은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